

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
(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)

심사보고서

2024. 11. 27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458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11. 04. 강남구청장(문화도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11. 27.)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문화국장 : 문경수)

가. 제안이유

-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‘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’ 와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필요성 :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, 공원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- 소요예산 : 137,212,000원(출연금 86,712천원, 이월금 50,500천원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
-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세부 자료 : 동의안 별첨 자료 참고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- 본 건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“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”와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강남구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 배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- 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 사업은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.
- 총 사업비 1억 3,721만 2천원 중 출연금 편성액은 8,671만 2천원이고 나머지 5,050만원은 재단 이월금에서 편성하였음.
 - 참고로 본 사업은 2024년 출연금 미편성 사업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재단 이월금 1억 1,319만 6천원으로 추진한 사업인바, 내년도 사업비 일부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 2024년 사업 추진

현황은 아래와 같으며, 공연자 중 지역예술인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<2024년 사업 추진 현황>

○ 회차별 진행프로그램 : 총 4회 진행

일시	공연명	내용	관람객수	만족도
5. 4.(토) 14:00	양재천 영동6교	-청년플레이그라운드의 퓨전국악공연 -강남합창단의 클래식 무대 -남녀노소에 인기있는 설운도 대중가수 무대	800여명	100%
9. 21.(토) 19:00	코엑스 동측 광장	-애쉬의 재즈 공연 -옥상달빛의 대중가수 무대	1,200여명	미실시
9. 25.(수) 19:00	잠원 한강공원	-더뉴재즈밴드의 재즈 공연 -정동하의 대중가수 무대	1,500여명	미실시
10. 12.(토) 13:00	세곡동 울현공원	-크로스트앙상블의 클래식 연주 -라비타의 아카펠라 무대 -루나플로우의 비보이 무대 -김태우의 대중가수 무대	900여명	97.7%

○ 본 사업은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원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,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사업 시기나 장소를 다양화 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해 보임. 아울러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서 지역예술인 발굴에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(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). 끝.

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(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)

의안 번호	4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1. 4.

제출자 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: 문화도시과

1. 제안이유

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‘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’와 관련된 예산을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거 미리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

나. 추진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다. 필요성 :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, 공원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라. 소요예산 : 137,212,000원(출연금 86,712천원, 이월금 50,500천원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세부 자료 : 별첨

‘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’ 운영 계획

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우리동네 작은 음악회<두루두루>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
- 사업기간 : 2025년 1월~12월(연 4회)
- 총사업비 : 금137,212천원(출연금: 86,712천원, 이월금: 50,500천원)
- 대상 : 지역주민, 인근 직장인 등
- 장소 : 관내 주요 커뮤니티 공간, 공원, 공공시설 등
- 사업내용
 - 주요 커뮤니티 공간, 공원에서 공연을 진행하여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
 - 지역 기반 예술인의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예술인 발굴
 - 강남구 권역을 순회하여 강남문화재단 사업 수혜 지역의 다양화
- 추진계획
 - 2025년 1월 : 기본 사업계획 수립
 - 2025년 3월~9월 : 공연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
 - 2025년 4월~10월 : 공연 4회 운영

□ 추진효과

- 우리동네 작은음악회<두루두루>를 개최하여, 지역 내 축제를 알리는 계기 마련
- 지역예술인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 발굴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
- 관객과 소통하는 등 문화예술욕구 충족과 활성화 기여

□ 산출내역

(단위:천원)

편성목별		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			
계		137,212	113,196	24,016	21.2%
[인건비(01)]		832	576	256	44.4%
[기간제근로자등보수(04)]	[기간제근로자등보수(04)]	832	576	256	44.4%
1. 안전요원 13,000원×4명×4회×4시간=832,000원	1. 안전요원 12,000원×3명×4회×4시간=576,000원				
[일반운영비(200)]		132,360	108,600	23,760	21.9%
[공공운영비(01)]		2,600	2,600	0	0.0%
[02-1. 공공요금 및 제세]	[02-1. 공공요금 및 제세]				
가. 행사보험료 6,500,000원×4회=2,600,000원	가. 행사보험료 6,500,000원×4회=2,600,000원				
[행사운영비(03)]		129,760	106,000	23,760	22.4%
1. 홍보비	1. 홍보비				
가. 포스터,리플렛 제작 3,000,000원×1식×4회=12,000,000원	가. 옥외홍보물 디자인/제작 2,000,000원×4개×1회=800,000원				
나. 현수막 제작 150,000원×6개×4회=3,600,000원	나. 포스터등 홍보물 디자인/제 2,000,000원×4회=8,000,000원				
다. 엑스배너제작 70,000원×2개×4회=560,000원					
2. 행사 진행비	2. 행사 진행비				
가. 진행 물품 구입 300,000원×4회=1,200,000원	가. 진행 물품 구입 300,000원×4회=1,200,000원				
나. 저작권사용료 300,000원×4회=1,200,000원					
다. 장소대여비 500,000원×4회=2,000,000원					
라. 앰블런스 구급차 배치 300,000원×4회=1,200,000원					
마. 공연팀 출연료 18,000,000원×4회=72,000,000원	나. 공연팀 출연료 15,000,000원×4회=60,000,000원				
바. 시스템 운영비 7,000,000원×4회=28,000,000원	다. 시스템 운영비 7,000,000원×4회=28,000,000원				
사. 공연 물품 대여 2,000,000원×4회=8,000,000원	라. 공연 물품 대여 2,000,000원×4회=8,000,000원				
[업무추진비(203)]		800	800	0	0.0%
[사업업무추진비(07)]		800	800	0	0.0%
1. 사업업무추진비 200,000원×4회=800,000원	1. 사업업무추진비 200,000원×4회=800,000원				
[일반보상금(301)]		3,200	3,200	0	0.0%

편성목별		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비교증감	증감률
예산액	전년도 당초예산액				
[행사실비 보상금(01)] 1. 강남구 예술인 800,000원×1팀×4화=3,200,000원	[행사실비 보상금(01)] 1. 강남구 예술인 800,000원×1팀×4화=3,200,000원	3,200	3,200	0	0.0%
[연금부담금 등(304)]	[연금부담금 등(304)]	20	20	0	0.0%
[연금부담금(01)] 1. 예술인고용보험료 가. 예술인고용보험료(강남구예술인) 3,200,000원×75%×0.8%=20,000원	[연금부담금(01)] 1. 예술인고용보험료 가. 예술인고용보험료(강남구예술인) 3,200,000원×75%×0.8%=20,000원	20	20	0	0.0%

작성자 : 문화도시과 문화예술팀 행정8급 김민영(☎ 02-3423-5935)